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증설, 교체에 대해서 현재 사전 허가토록 한 것을 사후 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신규 부착한 배출시설은 1년간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출허용총량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운영과정에 제기된 일부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영·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명칭”을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4.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일”을 “10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신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으로 갈음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2조의3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내어줄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한다.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내주는 것으로 취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취소사유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4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2.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3.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 받은 날

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을 “이전”으로, “유역환경청장”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전 신청하는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절차) ① 법 제20의2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이월 승인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이월 신청서를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차입 승

인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차입 신청서를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 연도의 5월 31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1항의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영 제24조2제2항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5호4서식에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후 별지 제5호의6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의4(외부 감축량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의 인정 신청은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 인정 신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보일러를 말한다.

별표 2 제2호에 비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질소산화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정한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지 않은 배출시설 중 LNG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는 3.7000(kg/천m³)를 적용한다.

5.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가 1ppm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별표 2 제3호의 비고 제3호 중 “가동개시 다음 연도 1년간의 예상 연료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및 향후 5년간의 예상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및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을 “가동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의 실제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의 나목의 “1차 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을 “배출허용총량의 합산량은 연도별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6조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배출구의 배출

허용총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

별표 3 제3호의 산정 방식 중 “가동일수”를 “가동월수”로 하고, 같은 호 중 “365”를 “12”로 한다.

별표 6의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7호부터 제12호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 하며, 제13호를 제17호로 하고, 제5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9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 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현황	수시	추가 할당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6.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취소사유 보고의 접수 및 통보 현황	수시	할당 취소 통보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8.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9.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의 인정 신청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	연 1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별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 별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 및 차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취소사유 발생 보고서

제출인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보고 내용	업종	주생산물명				
	할당 취소 사유	사유 발생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kg/년)					
	대기오염물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할당 취소 신청량(kg/년)					
	대기오염물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최근 2년간 총량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설치 허가 기준 미달로 인한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설치 증명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종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설치 허가 기준 미달로 인한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최신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1부
------	---

작성방법

1. 대표자란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할당 취소 사유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3. 사유 발생일란은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기준일을 적습니다.
 4.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현재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할당량을 적습니다.
 5. 할당 취소 신청량은 할당 취소 신청 대상인 대상오염물질 및 할당량을 적습니다.
-

통지서 코드번호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지서

수신인	상호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할당 취소 사유						
대기오염물질		할당 취소량(kg/년)				
질소산화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황산화물						
먼지						
대기오염물질		취 소 후 배출허용총량(kg/년)				
질소산화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황산화물						
먼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이의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사유						
신청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검토 및 결재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통보 신청인	→	확인 신청인

배출허용총량 이월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해당연도	이월연도(다음년도)	
	이월대상 대기오염물질	이월 신청량(kg)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이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연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해당연도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통보	→	확인
신청인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신청인	

배출허용총량 차입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해당연도		20 년				
	대기오염물질		차입 신청량(kg)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대기오염물질		차입 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kg)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차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해당연도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서류 1부 2. 해당연도 배출허용총량 이전량 관련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통보	➔	확인
신청인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신청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외부 감측활동 사업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의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외부 감측활동명	적용방법론						
	적용기술	투자비(천원)						
	사업시작일	외부감측량 인정 기간(10년 이내)						
	사업 세부내용							
	사업 규모		예상 감측량(kg)					
	구분	용량	설치규모	전체규모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1				예상 감측량 (kg)			
	2							
	3							
	4							
합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 감측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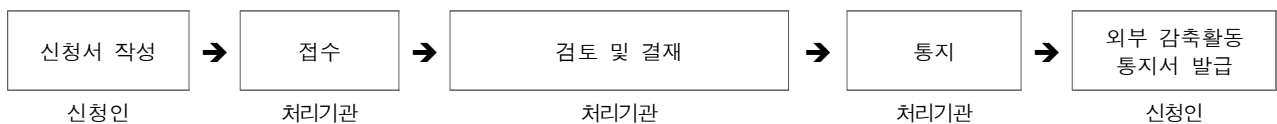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1. 직전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1부 2.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1부 3.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4. 사업계획서 및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5. 적용방법론의 일반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6. 대기오염물질 감측량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7.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대표자란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외부 감측활동명은 해당 활동의 장소(사업장), 적용기술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적용방법론이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부감측량의 산정방법을 적습니다.
4. 적용기술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습니다.
5. 사업시작일은 사업계획을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서류에 명시된 일자를 적습니다.
6. 외부감측량 인정 기간이란 외부 감측활동의 시설 설치 완료 이후 감측량의 예상 발생일부터 월단위로 10년 이내 기간을 적습니다.
7. 사업규모에 해당 외부 감측활동에 적용되는 설비의 규모를 적습니다.
8. 예상 감측량은 적용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예상 대기오염물질별 감측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통지서 코드번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외부 감측활동 사업계획 검토 결과 통보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외부 감측활동명		
사업 고유 번호		
사업 시작일		
외부감측량 인정 기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 감측활동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

※ 색상의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완료 내용	외부 감축활동명		적용방법론					
	적용기술		투자비(천원)					
	사업 고유 번호		사업완료일					
	사업 세부내용							
	사업 규모		예상 감축량(kg)					
	구분	용량	설치규모	전체규모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1				예상 감축량 (kg)			
	2							
	3							
	4							
합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의 사업 완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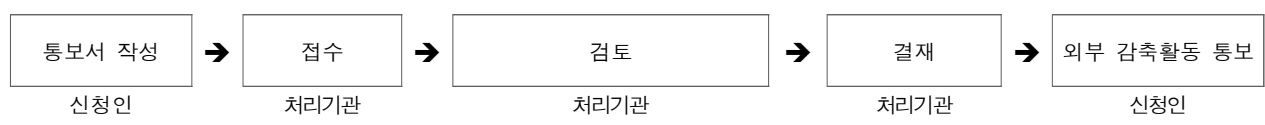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외부 감축량 인정 신청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의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외부 감축활동명		적용방법론					
	적용기술		투자비(천원)					
	사업시작일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10년 이내)					
	사업 세부내용							
	사업 규모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량					
	구분	용량	설치규모	전체규모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1				신청량 (kg)			
	2							
	3							
	4							
합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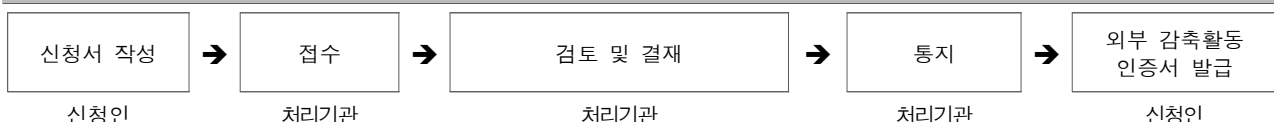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서류(적용방법론 및 외부감측량 산정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 연료 및 원료의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생산량이 포함된 명세서 1부
 - 나. 해당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명세서 1부
 - 다.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라.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1부
 - 마. 방지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바.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 (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3. 사업계획 및 적용방법론에 따른 준수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4. 대기오염물질 감측량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작성방법

1. 대표자란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외부 감측활동명은 해당 활동의 장소(사업장), 적용기술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적용방법론이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부감측량의 산정방법을 적습니다.
4. 적용기술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습니다.
5. 사업시작일은 사업계획을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서류에 명시된 일자를 적습니다.
6. 외부감측량 인정 기간이란 외부 감측활동의 시설 설치 완료 이후 감측량의 발생일부터 월단위로 10년 이내 기간을 적습니다.
7. 사업규모에 해당 외부 감측활동에 적용되는 설비의 규모를 적습니다.
8. 외부감측량 인정 신청량은 적용방법론에 따라 산정한 대기오염물질별 감측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통지서 코드번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외부감측량 인정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외부 감측활동명			
사업 고유 번호			
외부감측량 인정 기간			
외부감측량 산정 결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외부 감측량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변경허가·변경신고) ① (생략)	제9조(변경허가·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1. 사업장의 <u>명칭</u>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 <u>명칭</u> , 사업자등록번호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u>
<신설>	4. <u>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u>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	③ ----- ----- ----- -----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할당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 . 다만, 제2
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3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
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
항 및 영 제22조의3제5항-----

-----.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① -----

--- 25일-----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 설>

--.

② -----

----- 다음달 10
일-----

-----.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신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 신청으로 갈음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2조의3에 따라 총량관리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내어줄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한다.

<신 설>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내주는 것으로 취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취소사유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1. <u>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u> 2. <u>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u> 3. <u>이의신청의 내용</u> ② (생략)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u>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u> 개시 3일 전까지 <u>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u>	<u>에 문서로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u>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u>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u> 2.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u>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u> 3.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u>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u>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① ----- ----- ----- ----- <u>이전</u> ----- ----- ----- <u>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u>----- -----
--	---

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신설>

다만, 이전 신청하는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절차) ① 법 제20의2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이월 승인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이월 신청서를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차입 승인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차입 신청서를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

<신 설>

환경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 연도의 5월 31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1항의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영 제24조2제2항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후 별지 제5호의6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4(외부 감축량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의 인정 신청은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 인정 신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보일러를 말한다.